

#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 안내

## ■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요약

구분	특별공급	일반1순위	일반2순위	당첨자발표	당첨자자격확인 서류제출	계약체결
일정	05월 24일(월)	05월 25일(화)	05월 26일(수)	06월 01일(화)	6월 02일(수)~ 06월 08일(화)	6월 14일(월)~ 06월 17일(목)
방법	인터넷청약 (08:00 ~ 17:30)	인터넷청약 (08:00 ~ 17:30)	인터넷청약 (08:00 ~ 17:30)	개별조회 (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가능)	자격확인 서류 지참 방문접수 (10:00 ~ 17:00)	계약서류 지참 방문계약 (10:00 ~ 17:00)
장소	<b>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</b> - PC :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- 스마트폰 앱 *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음	<b>■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</b> - PC: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- 스마트폰 앱		<b>■ 당사 견본주택</b> : 경기도 화성시 오산동967-2620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견본주택 - 공급계약 체결시 방문예약은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. -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. - 자격확인 서류제출 대상 : 특별공급,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-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		

## ■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

구분	(일반)기관추천	다자녀가구	신혼부부	노부모부양	생애최초
청약 자격	세대원 전원 무주택				
	-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? 다음 각 항목의 사람(세대원)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가. 주택공급 신청자 나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: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라.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(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) :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마.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: 주택공급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				
기본 자격	해당 기관에서 추천받은 자	미성년 자녀 3명 이상 (태아 및 입양 포함)	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,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	만65세 이상 피부양 직계존속을 만3년 이상 계속 부양한 자	①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②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 (단,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 소득세를 납부) ③ 소득기준 충족하는 자
세대주 여부	세대주, 세대원			세대주	
청약통장 요건	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※ 기관추천 :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제외			청약통장 가입 후 24개월 ※ 1순위 요건 충족하는 자	
접수방법	특별공급 접수일 : 인터넷( <a href="http://www.applyhome.co.kr">www.applyhome.co.kr</a> )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접수 ※ 청약통장 구분없음				
기타	- 1세대 내 동일한 세대구성원이 각각 중복신청 (특공+특공) 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※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공급 기준 -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(직계존속 배우자 포함)의 주택 소유는 무주택으로 보며 (노부모 부양 제외), 부양 가족 수 제외 -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(기관추천, 다자녀, 신혼부부, 노부모, 생애최초 동일타입)로 동일타입에 한하여 추첨 후 입주자 선정 - 예비입주자 선정 : 같은 주택형 다른 공급유형의 낙첨자들과 함께 추첨 -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·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				
유의사항	- 당사 사업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로 당첨시 재당첨제한 10년 적용을 받음 - 재당첨제한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불가 -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음 -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 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-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순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				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※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,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주택법」 및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우선 적용됩니다.